

전주지방법원 2017. 8. 25 선고 2017가단630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7. 21.

판결 선고 2017. 8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67.2㎡[등기부상 표시: 김제시 C 제6호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2.99㎡]를 철거하고 그 대지 67.2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선용

별지